

의안번호	제 5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9. 2. 2.

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'99. 2. 2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중양 및 시·도지사 권한사항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“오염물질 발생량”을 “오염물질 발생현황”으로 함(안 제9조제2항제3호)

나. “내용의 산정”을 “비용의 산정”으로 함(안 제9조제2항제4호)

다. 중양 및 시·도지사 권한사항인 지역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(안 제15조제2호 및 제3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중 “발생량”을 “발생현황”으로 하고, 제9조제2항제4호중 “내용”을 “비용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중 “제2호 및 제3호”를 각각 삭제하고, “제4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환경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저감 대책 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<u>내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</u></p> <p>제15조 (환경위원회 설치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1. (생략) 2. <u>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</u> 3. <u>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발생현황 ----- ----- 4. ----- 비용 ----- -----</p> <p>제15조 (환경위원회 설치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삭 제) 3. (삭 제)</p> <p>2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